

정관 신·구대비표

현행	변경안	비고
<p>제20조 (개방이사의 선임) ① (생략)</p> <p>② 이사장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대상자는 제18조의 자격을 갖춘 자라<u>야 한다.</u> 다만, 동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20조 (개방이사의 선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이사장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대상자는 제18조의 자격을 갖춘 자라<u>로서, 사립학교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와 개방이사의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여야 한다.</u> 다만, 동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 반영</p>
<p>제31조 (이사회 회의록의 공개)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대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<u>3월 간</u>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31조 (이사회 회의록의 공개)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대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<u>1년 동안</u>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.</p>	<p>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3 반영</p>
<p>제43조 (해산)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43조 (해산)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<u>전항에 따른 관할청의 해산인가를 받거나 관할청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, 3개월 이내에 조직·회계·예산 관련 자료 등 사립학교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을 관할청의 장에게 제출한다.</u></p>	<p>사립학교법 제48조의2 반영</p>
<p>제48조 (휴직의 기간)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제47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<u>1년 이내로 하며,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. 다만, 여교원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.</u></p> <p>6의2. ~ 12. (생략)</p>	<p>제48조 (휴직의 기간)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제47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<u>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.</u></p> <p>6의2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	<p>사립학교법 제59조 반영</p>

현행	변경안	비고
<p>제74조 (징계사유의 시효)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(금품 및 향응 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의 경우 5년,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)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.</p>	<p>제74조 (징계사유의 시효)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(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,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)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.</p>	<p>사립학교법 제66조의4 반영</p>
<p>부 칙 <신 설></p>	<p>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.</p>	